

12·29 여객기 참사 유족 “사고 원인, 충분한 후속 조사 시급”

전문가로 유가족협의회 자문단 구성, 조사결과 검토 예고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25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엔진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충분한 후속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25일 낸 성명을 통해 “사조위는 사고기 엔진 자체에는 기계적 결함이 없었으며 조종사가 실제 손상된 오른쪽 엔진이 아닌 왼쪽 엔진을 정지시켜 항공기의 전기·동력 계통이 모두 차단됐다는 결론을 전했다”면서 “단편적인 결과 발표 만으로는 유가족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의 전체 맥락이나 연관 요인들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상황이다. 유가족들은 사고의 전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조위에 비행기록장치(FDR)·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등 핵

심 데이터에 대한 요약 정보 제공, 유족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 설명회·공청회 절차 마련을 사조위에 요구한 사실을 공개했다.

협의회는 또 “사조위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조종사 판단과 인적 요인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조종사의 피로도 교대 근무 체계 운항 스케줄 등 근무 환경 전반을 점검하고 사고 당시 조종사의 판단 과정·의사결정 체계 분석에 대한 추가 조사를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특히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려 사조위 조사 결과와 관련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유가족의 입장에서 사고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협의회는 “이번 사고는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충돌 지형 구조물의 위험성 등



관전회국토교통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장이 19일 무인국제공항에서 예정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엔진 사고조사 결과 브리핑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날 브리핑은 유족의 반대 무산됐다. /뉴스시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로컬라이저와 둔덕 구조물 관련 조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적인 사고

원인을 설명해야 한다. 사고의 진실이 왜곡되지 않고 모든 원인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뉴스시스



광주시 불법현수막 철거. 사진=광주시청제공

광주시, 미관 저해 불법 현수막 82% 감소

2023년 83만6182건에서 지난해 15만635건으로

광주시가 도심 미관을 해치고 시민 통행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적극행정을 펼쳐 82% 감소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83%가 ‘불법현수막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응답함에 따라 시와 자치구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수거에 나섰다.

결과 불법현수막은 2023년 83만 6182건에서 지난해 15만635건으로 감소했다.

불법현수막 감소는 전국 최초로 집회현수막 지침을 제정하고 보행안전 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의 적극행정을 펼쳤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합동점검반을 연중 운영하면서 주말·야간 게릴라식 게시 행위에 대해 선제 대응했다.

또 정비 기준이 없는 집회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청, 자치구와 협의해 지난해 8월 ‘집회현수막 업무 처리 지침’을 제정·시행했다.

공공장소에 무분별하게 부착되던

집회현수막 수를 규정하고 행사 후에는 자체적으로 철거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당현수막도 구별로 계절할 수 있는 수를 지정했으며 자치구는 불법적으로 부착된 정당 현수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무단횡단이 잦은 지역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행안전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했으며 소상공인에게는 합법적인 광고 수단을 제공했다.

광주시의 적극행정은 행정안전부 주관 ‘옥외광고업무 유공 포상’ 정부 합동평가에서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하반기에도 불법광고물 합동점검반을 지속 운영하며 현장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승철 건축경관과장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시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시민 안전과 도시 품격을 높이는 행정을 적극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승원 기자

‘유치원 공립전환’ 기밀 유출 교육공무원… 法 “해임 적법”

광주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전환 사업’ 관련 내부 자료를 기자에게 유출해 해임된 전직 광주시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낸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A씨 패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시 교육청 5급 사무관으로 재직 중이던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사업’ 관련 내부 자료를 당시 한 신문기자 B씨에게 건넸다.

A씨는 ‘공모 사업 선정자 배정기준표,’

‘심사항목·배점,’ ‘선정위원회 구성·내부위원 명단,’ ‘공모 신청 유치원 명단’ 등을 B씨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기자 B씨는 이미 2020년 유치원 원장들의 금품 청탁을 받고 A씨에게 받은 사업 관련 내부 자료를 건네주는 등 비위에 연루됐다.

A씨 역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이후 한 달만에 A씨는 해임 징계를 받았고, 인사 소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불복해 항소했으나 올해 3월에야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로 유죄가 확정

됐다.

A씨는 “형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소청 심사를 강행,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방해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또 기자였던 B씨의 요청에 따른 정책홍보 행위도 고의가 없는 정당행위다. 비위로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독자 판단에 의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고 반드시 형사 판결 확정을 기다려야 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비위에 대해서도 “지방공무원법

상 비밀 엄수·성실의 의무를 위반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징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적 기강의 확립이나 국민 신뢰 회복 등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지방공무원의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 파면 또는 해임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징계 처분에서 이미 A씨가 30여 년간 공직 생활을 성실히 수행해 온 점 등도 참작됐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씨는 B씨가 한때 몸 담았던 신문사를 상대로도 해임 징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내기도 했다.

/오권철 기자

‘친구가 이간질한다’ 험담한 중학생… 法 “학교폭력 아냐”

같은 반 학생이 자신을 따돌리고 있다는 취지로 험담한 중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징계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학생(소송대리인 아버지)이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특별교육이수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학생에 대해 내린 교내 봉사 5시간, 피해 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이수 3시간 처분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중학생인 A학생은 다른 친구들에게 ‘B학생이 이간질하고 따돌림을 주도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는 B학생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A학생에 대해 험담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등 서로 학교 폭력 가해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A학생과 B학생에 대해 나란히 특

별교육 이수 3시간·교내 봉사 5시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A학생 측은 B학생의 가해 행위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행위였던 만큼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학생의 B학생에 대한 가해 행위는 홀로 한 행위이고, 같은 반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 B학생을 괴하는 등 상황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처분 사유 중 ‘따돌림’ 부분은 위법하다. A학생의 발언은 B학생의 가해행위로 저해진 평판을 회복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상황을 해명하기 위한 소극적·방어적 행위다.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교생활 중 다른 학생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사실 만으로는 곧바로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전민규 기자

광주소방 신속구조팀, 화재 진압·구조·구급 전술 ‘전국 2위’

광주시소방안전본부 신속구조팀이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2위를 차지했다.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신속구조 분야 전국 2위를 차지한 ‘광주 신속구조팀’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 신속구조팀은 서부소방서 이광복 구조팀장과 임성환·조장원 소방장, 박기성·이혜준 소방교, 신상돈 소방사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광주 신속구조팀은 충남 공주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에 참가했으며 전국 19개팀과 화재 진압, 구조·구급 전술, 최강소방관, 신속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량을 겨뤘다.

광주 신속구조팀은 결속력과 전술수행 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국 2위를 차지했다.

김희철 광주소방안전본부 119대응과장은 “이번 수상은 실제 현장과 다름없는 반복 훈련과 결속력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지속적인 훈련과 체계적인 구조대 응 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